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전문공보담당자 형사1부장 김은경

전화 061-280-4329 / 팩스 061-280-7841

### 보도자료

2024. 4. 23.(화)

제목

## 중과실치사 단독범행으로 송치된 지적장애 청소년 공동살인 범행 규명

###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사경위, 수사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피고인 A의 '중과실치사' 단독범행으로 구속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보완수사한 결과,
  - 피고인 A의 살인 혐의 및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의 공범 2명을 밝혀내 지난 3. 11. 피고인 A를 살인으로 구속 기소하였고, 오늘(4. 23.) 공범인 피고인 B를 살인으로 구속 기소, 피고인 C를 살인 방조로 불구속 기소하였음
- 검찰은 피고인 A에 대한 사건 송치 이후 피고인 조사, 휴대전화 압수 수색 및 포렌식, CCTV 영상화질 개선·분석 등을 통해,
  -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동일 패턴으로 가위바위보를 하는 점을 이용하여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바다입수 내기 가위바위보 게임'을 제안한 후 게임에 진 피해자가 입수를 거부하자,
  - 피고인들은 심야에 선착장 부잔교 끝에서 피해자를 둘러싸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A, B는 입수를 강요하던 중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밀어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사실을 규명하였음
-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의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 1

## 사건관계인

### ① 피고인

- A(남, 20세, 무직), B(남, 16세, 고등학생), C(여, 14세, 중학생)

### ② 피해자

- D(남, 18세,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 ※ 지적장애

# 2

## 공소사실 요지

- '24. 2. 1. 23:24경 피고인 A, B, C는 목포 북항 선착장 부잔교<sup>1)</sup>(수심 약 4m인 바다의 수면으로부터 높이 50cm)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예상되는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하는 점을 이용하여, 바다 입수 내기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 피해자가 지게 되자
  - 피고인 A, B는 입수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바다 쪽으로 당기거나 밀치고,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다에 빠뜨려 살해함 [피고인 A, B : 살인],
  - 피고인 C는 A, B 옆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피해자가 부잔교 끝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등 A와 B의 살해 범행을 용이하게 함 [피고인 C : 살인방조]

# 3

## 수사 경과

- '24. 2. 21. 목포해양서, A 구속송치(죄명 : 중과실치사)
- ~'24. 3. 7. 검찰, 보완 수사

1) 바다 위에 타이어 등이 부착되어 떠 있는 방식의 목재 간이 구조물로, 주로 선박의 계류를 위해 설치됨

▶ CCTV 분석(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몸을 밀치고 당기는 등 괴롭히는 모습 등), 동일 피해자가 이전에도 가위바위보 게임에서 저 괴롭힘을 당한 다른 사건 기록, 휴대전화 압수·포렌식, 피고인 및 유족 조사

- '24. 3. 11.            검찰, 살인죄로 A 구속 기소
- '24. 4. 1.             검찰, B에 대해 살인, C에 대해 살인방조로 구속영장 청구
- '24. 4. 4.             법원, B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 C는 주거 일정, 14세의 소년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
- ~'24. 4. 22.          검찰, 추가 보완수사

▶ CCTV 영상 화질 개선·분석, 피고인 B, C의 보호자 등 조사

- '24. 4. 23.            검찰, B 구속 기소, C 불구속 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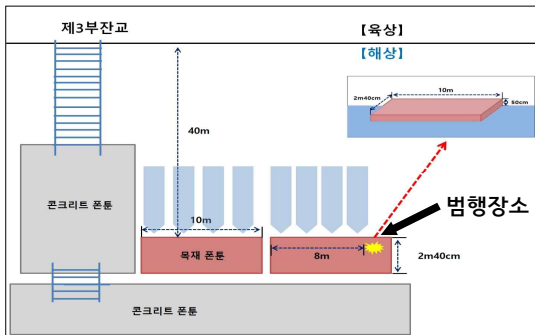
## 4 수사 결과 및 의의

### ① 살인 범행 규명

- 피고인 B와 C는 사건 당시 자신들 외에는 목격자가 없었던 상황을 이용, 경찰 수사 시에 피고인 A의 우발적인 단독 과실 범행이고 자신들은 목격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결과, 피고인 A만 중과실치사로 송치되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입건이 되지 않았음
-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후, 원거리에서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이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하여,
  - 범행 현장인 바다의 수심이 4M에 이르며, 당시 2월의 밤바다는 수온이 매우 낮고 수면 아래 10cm도 육안으로 보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므로

- 중증 지적장애가 있으며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그곳에 빠지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A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고의로 세계 밀어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사실을 밝혀내어 A를 먼저 구속 기소하였음

**범행장소인 부잔교(폰툰) 구조**  
(물에 떠 있는 형태의 목재 부잔교)



**피해자가 빠진 바다 수심**  
(수면 아래 줄자를 내려 측정, 3.84m)



## ② B, C의 범행 가담 등 전모 확인

- 검찰은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등을 통해, B, C가 마치 A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기로 모의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 CCTV 등을 통해 피고인 B가 A와 함께 겁에 질린 채 바다 입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리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당기거나 밀치고, 피고인 C는 피해자가 부잔교 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앞을 막고 서서 휴대전화로 범행 과정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 B, C의 범행 가담 사실을 밝혀내어 지인들이 서로 장난을 하다가 A의 실수로 벌어진 사건으로 종결될 뻔한 범행 전모를 규명하였음
- 검찰은 B, C가 소년범임에도 피해의 중대성,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B, C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 B를 직접 구속하여 기소하고, 피고인 C를 불구속 기소한 것임

### ③ 피해자 유족에 대한 보호·지원

-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장례비와 심리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재판절차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적극 보장할 예정임

## 5

### 향후 계획

-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피해자 유족의 보호·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